의 안 검 토 보 고 서

1. 제출일자 및 제출자 : 2009. 10. 30. 대전광역시장

2. 건 명: 대전광역시 도로복구공사 원인자부담금 등 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

3. 안건요지 : 따 로 붙 임

4. 검토의견 : 따 로 붙 임

위 안건에 대한 검토사항을 별첨과 같이 보고합니다.

2009년 12월 일

산 업 건 설 위 원 회 전문위원 연정 수

대전광역시 도로복구공사 원인자부담금 등 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보 그

본 안건은 2009년 10월 30일 대전광역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09년 11월 3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음.

1. 제안이유

「도로법」의 개정으로 손궤자부담금 제도가 폐지됨에 따라 손궤자부담금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, 「도로법 시행령」의 개정 에 따라 도로복구 부담금의 산출기준을 정비하려는 것임.

2. 주요내용

- 가. 「도로법」의 개정에 따라 인용조문을 정비함(안 제1조 및 제3조).
- 나. 손궤자부담금 제도의 폐지에 따라 용어를 정비함(안 제2조부터 제6조 및 제8조).
- 다. 도로복구 부담금 등 산출기준을 정비함(안 별표 1).

3. 검토의견

○ 본 개정 조례안은 인용하고 있던 「도로법」과 같은 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용어와 인용조문을 정비하고, 조례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불합리한 문제를 현실에 맞게 정하려는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.